



학사관리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일	2022. 8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학사 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3조 (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

1. 학사 제도와 관련된 사항

2. 학사관리(수업, 학적관리, 성적평가 등) 운영에 관한 사항

3. 재학생충원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1/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한다.

제 6조 (회의록) 위원회에서 자문 · 심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 7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